

第159回國會

政治關係法審議 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92年10月12日(月)
場 所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行政委員會)

議事日程

1. 審議班構成의件

審査된案件

1. 審議班構成의件 1面

(11時41分 開議)

○委員長 申相式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立法調査官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玄誠洙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申相式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0月10日 3黨幹事會議에서 本 特委運 營과 관련하여 合意한 事項을 먼저 報告드 리겠습니다.

그 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5個의 政治關係法案을 成案하기 위 하여 1個의 法案審議班을 構成한다.

둘째, 同 審議班의 委員數는 6人으로 하 되 民主自由黨 3人, 民主黨 2人, 統一國民 黨 1人의 비율로 構成한다.

셋째, 審議班의 委員選任은 委員長과 幹事 에게 委任하여 언제든지 委員交替가 가능토 록 한다.

넷째, 委員會와 審議班의 議決은 全員合議 制로 한다.

다섯째, 審議班의 活動은 國政監査期間을 除外한 10月12日부터 10月29日사이 7日間으 로 한다.

여섯째, 國政監査 終了후 審議班을 增設한 다.

일곱째, 審議班은 10月30日 正오까지 報告 書를 作成하여 委員長에게 提出하고 委員長 은 10月31日 오전 10時에 全體會議을 開會 하여 審議班 審査報告를 받은 후 議決하여

議長에게 報告하여 法案議決節次를 取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여러 委員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審議班構成의件

(11時44分)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審議班構成의件을 上程합니다.

이 案件은 방금 說明한 3黨幹事合意事項 에 따라 法案審議班을 構成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 주요 內容을 말씀드리면 本 特委構成 目的인 大統領選舉法, 選舉管理委員會法, 國家安全企劃部法, 政治資金에관한法律, 地方自治法등 5個 法案을 成案하기 위하여 審議 班을 構成하되 그 명칭은 法案審議班으로 하고 審議班 委員數는 6人으로 하며 民主 自由黨 金重緯委員 黃潤祺委員 李仁濟委員, 民主黨 朴相千委員 鄭瓊浩委員, 國民黨 車秀 明委員을 選任하고자 幹事간에 合意가 되었 습니다.

그러면 法案審議班을 이와같이 構成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아무췌록 各 政黨間에 진지한 대화를 통 하여 審議班의 活動時限인 10月29日까지 5 個 法案을 成案하여 委員會에 報告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오늘 午後 6時에 審議班이 開會할 수 있도록 各 委

員님들은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議事日程은 幹事들과 協議하여 추후 通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46分 散會)

○出席委員

申相式	康容植	姜在涉
金榮珍	金重緯	李仁濟
黃潤鎭	姜喆善	金璋鎬
朴相千	鄭瓊浩	崔洛道
邊精一	丁璋鉉	車秀明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門委員	石斗洙
立法審議官	宋金同
立法審議官	申世華
副理事官	孔忠錫

【報告事項】

○特別委員變更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政治關係法 審議特別	金德圭	崔洛道	民主黨

(10月8日字)

○議案回附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10月7日 政府 提出)

10月7日 回附됨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10月7日 朴相千·張基旭·文喜相議員外 93人 發議)

10月7日 回附됨

○請願回附

大統領選舉法改正에 관한請願

(8月17日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

李漢彬의 2人으로부터 張基旭議員外 1人의 紹介로 提出)

要旨

1. 現行 大統領選舉法 내용은 選舉運動의 自由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國民의 政治的表現의 自由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選舉運動의 自由가 擴大되는 방향으로 同法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현대 民主國家에 있어서 選舉法의 基本理念은 自由와 公正性으로 집약될 수 있는

데 現行 大統領選舉法은 선거의 公正성을 지나치게 내세워 選舉運動의 自由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또 하나의 이념인 政治的表現의 自由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제는 選舉運動의 自由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轉換하여 選舉를 均衡이고 調和롭게 치러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되므로 大統領選舉法의 改正方向을 아래와 같이 提示하니 同法改正에 반영하여 주기 바라는 請願임.

첫째, 選舉運動의 포괄적 制限規定을 폐지할 것

둘째, 選舉公營制 強化에 의한 돈 덜쓰는 選舉風土를 정립할 것

셋째, 當選無效事由를 확대하고, 選舉訴訟制度를 개선할 것

넷째, 選舉管理委員會의 權限을 확대할 것

다섯째, 軍不在者投票制度를 改善할 것

10月7日字 回附 됨.

選舉管理委員會法改正에 관한請願

(8月17日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08-

129 강문규의 2人으로부터 張基旭議員外 1人의 紹介로 提出)

要旨

1. 公正하고 效率的인 選舉管理를 위하여 選舉管理委員會의 政治的 中立성과 獨立성이 強化될 수 있도록 現行 選舉管理委員會法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의 公正한 管理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므로 이러한 職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政治的 中立성과 機關의 獨立성이 確保되어야 하나 現行 選舉管理委員會法上的 機關構成方式이나 機關內部人事 및 豫算實態로서는 中立성이나 獨立성 確保가 어려워 선거 때마다 違法한 官權介入 是非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바, 이러한 官權介入是非를 줄이고 中立적이고 효율적인 選舉管理를 위해 中央 및 下級 選舉管理委員會 構成의 中立성과 內部人事 및 豫算의 獨立성이 強化될 수 있는 방향으로 現行 選舉管理委員會法을 改正하여 주기 바라는 請願임.

10月7日字 回附됨.